



: 2020-10-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9가단118891(본소) 용역비  
2019가단11890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손도영, 제갈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지연, 이원표, 임성도, 강혜림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0.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020-10-21

## 청 구 취 지

-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에게 5,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1. 24. 웹에이전시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합병한 회사이고(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C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문·판매·임대·유지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 피고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가 발주한 'E마트 문화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이하 '이 사건 고도화사업') 중 '기획/디자인/퍼블리싱' 부분을 계약 금액 1억 2,700만 원, 기본계약기간 2017. 3. 15.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수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고도화사업은 E마트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사이트의 교육 내용, 강사, 시간, 수강신청 등 제반 시스템을 2017. 11. 30.경까지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서, 업무 내용상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front-end' 부분(이하 '프론트 부분')과 관리자가 이용하는 'back-end' 부분(이하 '백 부분')으로 나뉘는데, 피고는 D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 전체의 총괄 PM(Project Manager) 업무(이하 'PM 업무')를 맡는 한편 프론트



부분과 백 부분의 개발 등도 담당한 것이었고, 원고는 D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 고도화사업 중 일부를 하수급한 것이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고도화사업의 발주자인 D는 2017. 7.~8.경 그때까지의 업무 진행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피고의 PM 업무에 관한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위 고도화사업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D가 F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F가 종래 E마트 문화센터 사이트의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던 업체로서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고도화사업 계획 단계에서도 당초에는 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M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컨설팅만 제공하기로 역할을 축소하였던 경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 그리하여 F는 2017. 8.경 무렵부터 이 사건 고도화사업의 PM 업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다만 D와 사이에 이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고,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바 있었던 기존 컨설팅 계약의 업무 내용을 확장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017. 8. 22. 원래 피고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던 프론트 부분의 개발업무 부분을 대금 6,000만 원에 주식회사 G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G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8. 29. 아래의 내용과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 또는 '이 사건 협약서').

### 협약서

피고는<sup>1)</sup> 이 사건 고도화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약을 근거로 원고에게 계약 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1. 기존 계약금액인 총 ...(중략)... 원고에게 선금 3,8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인 8,89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2. 잔금 7,8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고도화사업 완료 및 D의 대금 정산과 관계없이 원고가 맡은 업무 완료 후 철수 시<sup>2)</sup> 아래 일정으로 지급하기로 함
  - 만약 D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받은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2,540만 원, 잔금 5,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 D로부터 대금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중도금 청구 월인 2017. 11. 30.까지 중도금 2,540만 원, 잔금 청구 월인 2018. 1. 31.까지<sup>3)</sup> 잔금 5,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사. 원고는 2017. 9. 22.경까지 이 사건 고도화사업이 진행된 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원들을 철수시켰고, 이후에는 간간이 직원을 파견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을 통해 일부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계속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최종 산출물을 D 측에 직접 제출한 다음 2018. 1. 12.경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검수 및 잔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자. 이 사건 고도화사업에 따른 E마트 문화센터의 새로운 사이트는 2018. 1. 18.경 오픈되었으나, D는 이후로도 2018. 5.경까지 피고와 F 측에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

차. 피고는 2018. 4.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을 유보해 두었던 이 사건 계약 및 협약상의 잔금 5,260만 원 중 4,26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협약서에 '중도금'으로

1) 이하 협약서 원문의 당사자, 계약 표시, 내용 등을 이 사건 내용과 쟁점에 맞게 다소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부분이므로 밑줄 표시를 하였다.

3)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도화사업 계약기간 또한 위와 같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된 2,540만 원은 그 전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5, 6,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1) 원고

원고는 2017. 1. 이 사건 고도화사업의 발주자인 D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검수를 받는 등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협약에 정해진 대금 중 미지급 잔금 1,000만 원(= 5,260만 원 - 4,260만 원)<sup>4)</sup>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원고는 2017. 9. 22.경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최대 75% 정도만 마친 뒤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 조건인 '맡은 업무 완료'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4) 제1의 차.항 참조



##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갑 제2, 4 내지 6, 15,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이행할 업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론트 부분 중 기획/디자인/퍼블리싱 부분으로서, 여기서 기획 업무라 함은 서비스 및 프로세스, 사용자 화면을 각 설계하고 콘텐츠를 수급, 가공하는 업무를 가리키고, 디자인 업무라 함은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웹의 디자인 업무를 가리키며, 퍼블리싱 업무란 위와 같이 디자인된 내용을 웹 브라우저,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웹 문서화하는 코딩 작업을 가리키는 사실, ② 따라서 당초 프론트 부분 중에서도 위 '기획/디자인/퍼블리싱' 업무가 아닌 '프로그램 개발' 작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였고, 그밖에 백 부분의 경우 전체 10개 남짓의 메뉴 중 '홈페이지 관리' 화면의 기획 및 디자인 메뉴를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외에는 모두 피고의 업무 영역이었던 사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달된 견적서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업무 중 '기획/디자인/퍼블리싱' 업무의 화면 본수(本數)는 약 80본, '홈페이지 관리' 관련 업무의 경우 약 10본을 기준으로 업무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원고의 투입 공수<sup>5)</sup>는 일용 22M/M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17. 4. 초경 디자인 시안 제작 업무를 시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개시하여 2018. 1. 4. D에 최종 산출물을 제출할 때까지 예정된 공수를 초과 투입하여 '기획/디자인/퍼블리싱' 업무 관련 약 90본 이상, '홈페이지 관리' 화면 업무 관련 약 35본의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E마트 문화센터 사이트가 2018. 1. 18.경 오픈한 사실, ⑤ 이

5) 여기서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을 의미한다. 즉 1M/M은 1명의 인원이 1개월간 업무에 투입된다는 의미이다.



: 2020-10-21

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도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정해진 검수 기간(1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피고가 검수의뢰를 통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8. 1. 29.에야 이메일을 통해 'D에서 2, 3월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⑥ 이후 2018. 2.경 D가 피고에게 추가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원고 측에 전달하여 추가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사항의 대부분이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나 당초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항이므로 '지점 메인' 화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퍼블리싱과 관련된 부분만 일부 수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한 사실, ⑦ 그러자 피고는 D 측이 요구한 사항들 중 원고가 수정 작업을 해주지 않는 사항들에 관하여 2018. 5.경까지 피고 및 F의 인원을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F와의 정산이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중 1,000만원의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 ⑧ 위와 같이 2018. 1. 18.경 오픈한 E마트 문화센터의 프론트 부분 화면은 원고가 제출한 최종 산출물이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제1항과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주된 업무 범위가 이 사건 고도화사업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프론트 부분의 '기획/디자인/퍼블리싱' 업무에 그치는 점, ㉡ 원고가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본수와 투입 공수를 초과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8. 1. 18. E마트 문화센터의 새로운 사이트가 오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고도화사업의 총괄적인 PM 업무와 개발 업무는 원래 피고의 소관 사항이었으므로 D



측에서 위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원고의 작업 결과가 미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간접사실은 될 수 없는 점, ㉔ 또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㉕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발주자인 D 측에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이를 검수 합격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㉖ 피고는 원고가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당초의 계약 대비 원고의 미이행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D에서 위 고도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거나 일단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한 사항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업무는 일단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어 이 사건 협약상 '맡은 업무 완료'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미이행 문제가 아니라 완성물의 하자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하자과 관련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로 잔대금이 1,090만 원(= 8,890만 원 - 7,800만 원)<sup>6)</sup>만큼 삭감되고 계약 기간이 연장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원고가 계약을

6) 이 사건 협약서 제1항 참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서상 계약금액의 축소 및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책임 소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만일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다시 특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위 협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단지 '원고가 맡은 업무 완료 후'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sup>7)</sup>), 오히려 위 협약서의 전체적인 형식이 피고가 원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기한을 확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위 협약서 모두에 기재된 '전체 프로젝트의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라는 문언을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고도화사업 관련 PM 업무 진행상의 문제, 주관 PM 업체의 실질적 교체 및 그로 인해 체결된 G 계약 관련 추가 비용 문제 등(제1의 라. 마.항)과 연결시켜 볼 때 위 협약서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주로 피고 측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약의 체결을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연결시킬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고,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협약에 정해진 잔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7) 다만 이 사건 협약서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피고가 적어도 D에 대한 중도금 청구 월인 2017. 11. 30.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은 엿볼 수 있다.



###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31.까지로 정해진 이 사건 계약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7. 9. 22.경 계약 내용 중 최대 75% 정도만 마친 뒤 일방적으로 이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 지체된 67일의<sup>8)</sup> 지체상금 중 이 사건 계약상 정해진 한도액인 계약금액의 10% 1,270만 원(= 1억 2,700만 원 × 10%)과, ㉡ 이 사건 계약 중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175만 원(= 1억 2,700만 원 × 25%)의 합계인 4,445만 원(= 1,270만 원 + 3,1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위 ㉡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소 인용금액을 상계한 후 잔액을 반소로 구하고, 그렇지 않고 위 본소청구가 기각될 경우 위 4,445만 원 전액을 반소로 구한다.<sup>9)</sup>

#### 나. 판단

피고가 반소 청구원인의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계약 미이행 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 및 이에 관한 해석에 의할 때, 설령 그 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협약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반소 청구원인의 전제로 주장하는 사실은 어느 것이나 인정할 수 없으므로,

8)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협약에 의해 2017. 11. 30.로 연장되었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기성고를 지체상금의 시기·종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지체기간을 산정하였다.

9) 피고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이에 맞추어 반소 청구취지를 정리하지는 않았다.



: 2020-10-21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